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6.18.  
제출자:평창군수(농업경영과장)

## 1. 제안이유

농산물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산지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소규모 영농의 한계 극복과 농산물 물류이동의 규모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농업인 유통시설 운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위탁운영자에게 무상임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설치 근거법령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나. 대상건축물 설치상황

- ◇ 소재지 :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산330-2번지외 3필지 부지 4,298㎡
- ◇ 규모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170㎡
- ◇ 사업비 : 1,055,000천원 {국비(70%)738,500, 도비(9%)94,860, 군비221,640}
- ◇ 준공일 : 2003. 10. 16
- ◇ 시설 내역
  - 집하장 : 233.5㎡
  - 선별장 : 400.8㎡
  - 소포장실 : 110.4㎡
  - 예냉·저장실 : 331.2㎡
  - 기타 : 94.1㎡
- ◇ 기계·장비류
  - 감자 선별기 : 1조
  - 구근세척기 : 1조

## 다. 운영 및 사후관리

- ◇ 시설 설치 : 평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축물 1,170㎡ 및 기계시설)
- ◇ 부지제공 및 시설물 운영 : 봉평농협
- ◇ 평창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지역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다음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관계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시정 조치
  - ① 평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②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③ 평창군수가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평창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후) ⇒ 지방재정법 제88조④항
- ◇ 봉평농협은 건축물 허가당시 이상의 부지를 평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봉평) 부지로 무상제공(국고보조금 관리기간 10년이상)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농산물 품질향상 및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승인결과를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항제1호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제1항15호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제2항4호
  - ◇ 2004년 공유재산관리 지침(행정자치부)
- 2) 농산물유통시설물 무상임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평창군(건축주)과 운영자(봉평농협) 상호간 협약서 별도 작성 운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 □ 임대대상 건물

- ◇ 소재지 :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산330-2번지외 3필지 부지 4,298㎡
- ◇ 규모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170㎡
- ◇ 사업비 : 1,055,000천원 {국비(70%)738,500, 도비(9%)94,860, 군비221,640}
- ◇ 준공일 : 2003. 10. 16
- ◇ 임대시설 내역
  - 집하장 : 233.5㎡
  - 선별장 : 400.8㎡
  - 소포장실 : 110.4㎡
  - 예냉·저장실 : 331.2㎡
  - 기타 : 94.1㎡
- ◇ 임대장비 내역
  - 감자 선별기 : 1조
  - 구근세척기 : 1조

## □ 운영 및 사후관리조건

- ◇ 시설 설치 : 평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축물 1,170㎡ 및 기계시설)
- ◇ 부지제공 및 시설물 운영 : 봉평농협
- ◇ 평창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지역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다음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관계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시정 조치한다.
  - ① 평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②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③ 평창군수가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평창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후) ⇒ 지방재정법 제88조④항

- ◇ 봉평농협은 건축물 허가당시 이상의 부지를, 평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봉평) 부지로 무상제공(국고보조금 관리기간 10년이상)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농산물 품질향상 및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승인결과를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①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 2004年 공유재산관리 지침

### 2-9. 지역특산품·지역생산품의 「공동생산·전사·판매」 지원

#### 가.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내에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유명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법인이 공동생산·공동전사·공동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 대부를 하거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한 업무임

#### 나. 필 요 성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에 대한 개념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그 대상범위등 요건을 정하여 운용이 필요함

#### 다.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 및 동조 제2항제4호

## 라. 적용범위

- 지역특산품 : 각 지방자치단체구역안에서 전래적인 문화와 기술에 의거 생산되는 대표적인 그 지역의 유명특산품(예시 : 전통발효식품, 민속음료, 민속주, 약제, 천연염료, 전통도자기, 유기, 나전칠기 등 전통 고유기술 제품과 한산모시, 안동포, 나주배, 이천쌀, 영광굴비 등 지역대표 농림축수산물, 강화화문석, 전주부채, 순창고추장 등 전국 1지역 1명품 등 지역특산품)
- 지역생산품 :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서 집단으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국내 유명생산품(예시 : 대구성유, 익산니트, 부산신발 등)

## 아. 관련조치

- 관련단체 또는 관련법인이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생산·공동전시·공동판매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관련단체가 이에 해당되므로 이의 해당 여부를 검토후 대부
  - ※ 일부 지자체에서 보통 농수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간주하여 농민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사례가 있는바, 적용범위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의 판매 촉진이 입법취지이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용인가를 정밀 심사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 관련단체 또는 관련법인이 사용코자하는 재산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부지 :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형질변경등 용도변경허용과 일정기간(1회 3년 이내 단기간에 한함) 철거를 전제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상 영구시설 축조허용 범위내에서 가능)
  - 건물 : 기존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 무상대부가 필요한 경우는 무상대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지대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대부가 가능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